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

제정 2012. 11. 5 조례 제1889호

일부개정 2015. 11. 5 조례 제2130호(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16. 9. 26 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 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
일부개정 2020. 3. 25 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 일부개정 2022. 8. 2 조례 제2868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5. 11. 5〉
 - 1. "아토피질환"이란 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, 식품알레르기, 아나필락시스,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.
 - 2. "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"(이하 "안심학교"라 한다)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, 아토피질환 교육·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말한다.
 - 3. "저소득층"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 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 하는 사람,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.
- 제4조(교육·홍보)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5조(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, 아토피질환 검사,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, 교육·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)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수 있다.
 -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아토피캠프 운영 등)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)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20. 3. 25〉
- 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
 - 2.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
 - 3.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, 교육 자료 개발, 연구
 - 4.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.
 -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- 1. 시민(학부모)
 - 2.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 - 3. 교육관계자(교육청 관계자, 학교장, 보건교사, 영양사, 보육시설장)
 - 4. 관계공무원,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- 제11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. 위원회의 의장

- 이 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어느 한 성(남성 혹은 여성)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. 〈개정 2022. 8. 2〉
- 제13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4조(상담센터 설치) 시장은 「보건의료기본법」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,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 시 아토피 상담센터(이하 "상담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제15조(상담센터 기능)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 - 1. 아토피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
 - 2. 아토피질환 환자 진료 연계
 - 3. 아토피질환 보건교육 및 홍보
 - 4. 3년마다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
 - 5. 아토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 - 6.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
 - 7.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- 제16조(상담센터 운영) 시장은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영 또는 아토피질환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위탁할 경우에는 의사,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관,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상담센터 인력 및 급여) 상담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및 보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「광명시 공유

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

재산 관리 조례」「광명시 포상 조례」「광명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〈개정 2015. 11. 5, 2016. 9. 26〉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11. 5 조례 제2130호,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9. 26 조례 제2196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2. 8. 2 조례 제2868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(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, 네블라이저)								
환 자	성명		생년월일				학교명(명)	
			성	별			학년, 반	
신 청 인	성명				생년월일			
	주소				연 락 처		집)	
							핸드폰)	
신청내용								
	금액	급	원		입금계좌	은 행명		
청구				원		계좌번호		
					내역	예 금 주		

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, 천식,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.

>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(인) 년 월 일

광명시장귀하

※ 구비서류

- 1. 저소득 증명서(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)
-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(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)
- 3. 영수증 원본(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,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)
- 4.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(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일 제출)
- 5. 통장사본
- ※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(흡입기)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 단서를 제출하여야 함.